

02

2023년 세법개정안 평가¹⁾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cho@kipf.re.kr)

I. 들어가며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례적으로 ‘세제개편안’이라 명명되었던 지난해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 굵직한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반면 올해 개정안에는 상속세제 개편이나 부동산세제 개편 등 당초 관심을 모았던 굵직한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존의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 속에서 ‘미니멀’하게 구성되었다는 평이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2023년 세법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필자 개인의 의견을 덧붙이도록 한다.

II. 추진 배경

1. 경제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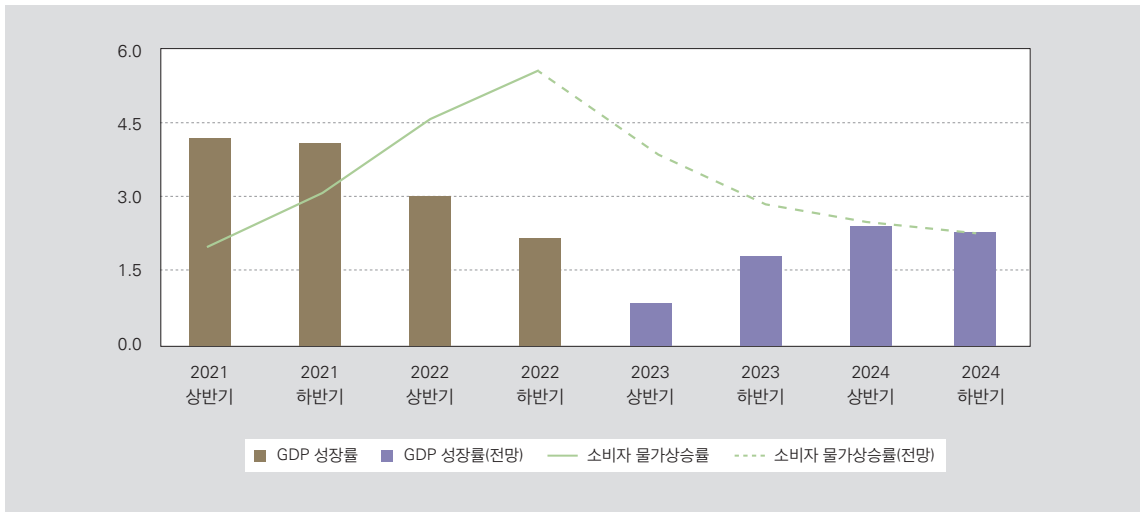
지난 5월 발표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은행

1) 본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및 편집위원분들, 원내 토론을 통해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동료 연구위원분들께 저자는 감사를 표합니다. 본고에 남아있을 수 있는 오류나 실수는 모두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2) 『YTN』, 「2023 세법개정안 출산장려 효과? 글썄...」, 2023. 7. 28.

[그림 1] GDP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추이 및 전망

(단위: %)



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상승률이며, 2023년 상반기 이후는 전망치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 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023년 상반기 0.8%, 2023년 하반기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³⁾ 이는 2022년 2.6% 수준의 성장률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로, 한국은행은 2024년까지 경기회복 흐름이 완만히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그림 1] 참조). 한편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경우 2022년 하반기 5.6%까지 치솟았으나 2023년 상반기 이후 그 상승세가 다소 꺾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국제유가 변동이나 공공요금 인상 등의 요인에 따라 그 흐름이 영향을 받을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였다. 요컨대 향후 경기회복과 물가상승 둔화가 예상되나 그 속도가 더디고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 셈인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이 강조된 것은

이러한 경제적 여건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2. 구조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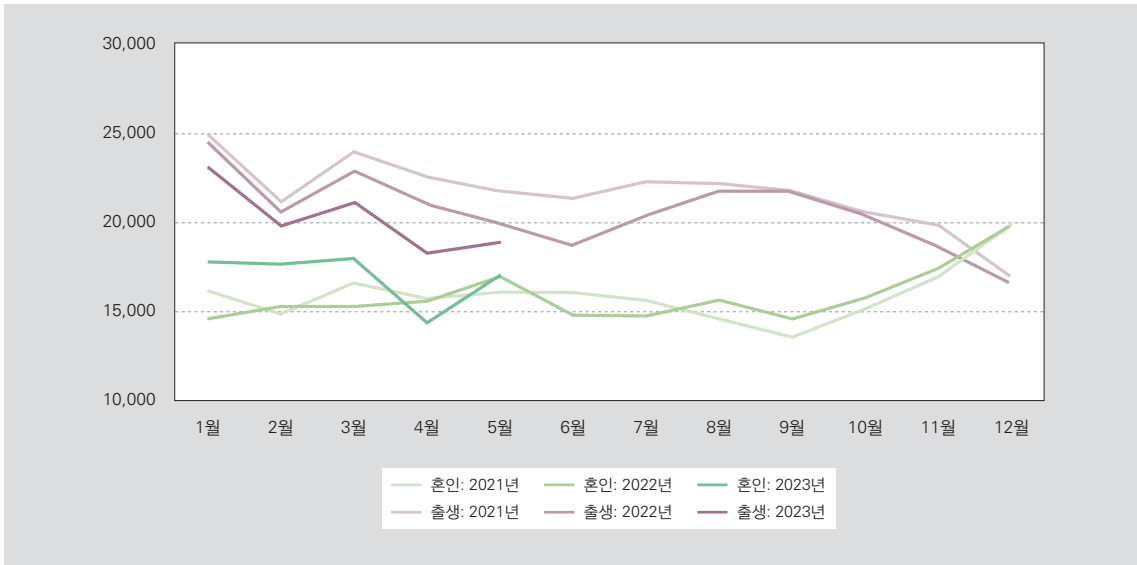
경제적 여건과 더불어 구조적 여건 역시 개정안 마련 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2]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월별 혼인 건수 및 출생아 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혼인 건수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월평균 1만 6,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출생아 수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월별 최저치가 갱신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혼인 건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⁴⁾에서 혼인이 출산으로

3) 연간으로는 1.4% 성장률에 해당하는데, 최근 IMF 역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4) 2017~2020년 동안 월평균 혼인 건수는 2만건 수준으로 집계된 바 있다(통계청, 2023. 7. 26.).

[그림 2] 월별 혼인 건수 및 출생아 수: 2021년 1월~2023년 5월

(단위: 건, 명)



주: 2022년과 2023년은 잠정치
출처: 통계청, 「2023년 5월 인구동향」, 2023. 7. 26.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로 이어지는 경로 역시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올해 세법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된 개정안에 다수 포함된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정책들은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3. 재정적 여건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 시 재정적 여건에 대한 고

려 역시 예년에 비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은 2월부터 6월까지 연도별 총국세 수입 진도율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2023년 6월 현재 진도율이 44.6%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진도율이 높았던 작년(55.1%)보다 10.5%p 낮음은 물론 2017~2021년 평균(52.7%)과 비교해도 8.1%p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6월까지 누적된 내국세 수입 역시 작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목별로는 법인세 감소 폭이 16.8조원으로 가장 두드러지고 소득세(11.7조원)와 부가가치세(4.5조원)의 감소폭 역시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그림 4] 참조).⁵⁾ 따라서 작년과 같이 큰 폭의 세수 감소를 동반하는 정책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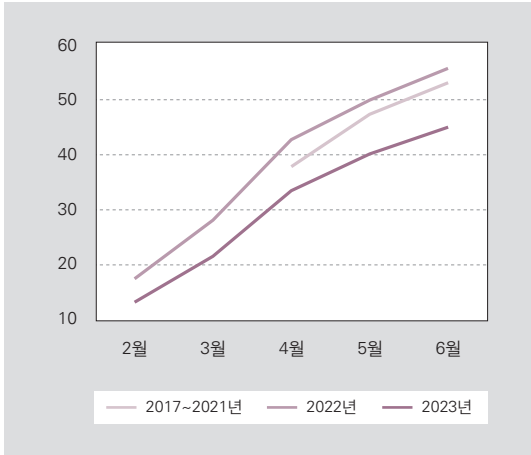
5) 물론 예상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할 경우 진도율 회복과 세수 결손 만회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이를 감안할 때 만회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정안에 포함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는데, 실제로 올해 개정안이 비교적

세수 증립적⁶⁾으로 설계된 배경에는 이러한 재정적 여건에 대한 고려가 일정 수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3] 연도별 총국세 수입 진도를 비교

(단위: %)



주: 2017~2021년은 최대 및 최소 연도를 제외한 질사평균 진도를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현황」 각 연월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Ⅲ. 주요 내용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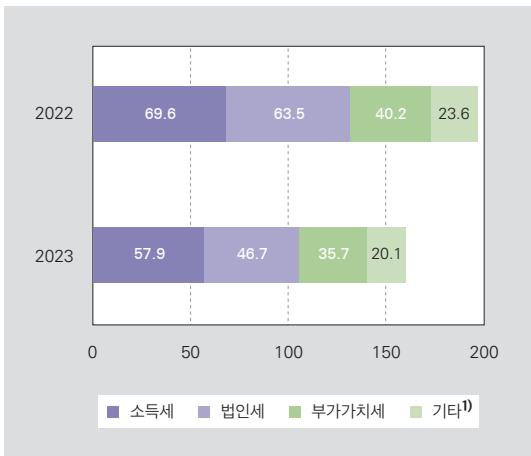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경제적·구조적·재정적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의 측면에서 세법개정 사항들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다음에서는 각 측면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해당 내용들에 대한 논평을 덧붙이기로 한다.

1. 경제 활력 제고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이다. 2023년 8월 현재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자는 제작비용의 3~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개정안에는 현재의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허용하는 세제지원 확대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대기업)의 경우 제작비용의 최대 3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그림 4] 6월 누계 내국세 수입 비교: 2022~2023년

(단위: 조원)



주: 1)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을 포함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현황」 각 연월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6) 개정안의 세수효과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표 1> 영상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확대(안)

(단위: %)

구분	현행	개정안		
		기본공제 상향	추가공제 ¹⁾ 신설	최대공제율
대기업	3	5	10	15
중견기업	7	10	10	20
중소기업	10	15	15	30

주: 1) 총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 등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2023. 7. 27., p. 1.

될 전망이다(<표 1> 참조).

영상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세제지원 확대안은 지난 7월 4일 발표되었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미 그 방향성이 예고된 바 있는데,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준할 만큼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려는 계획에는 영상콘텐츠 산업을 잠재력이 높은 유망 산업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판단에는 고용 및 내수 촉진,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영상콘텐츠 산업의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기저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행 공제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해당 업계의 호소 역시 일부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⁷⁾ 하지만 영상콘텐츠 제작이 대부분 외부 투자금 유치 후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이 민간 차원에서의 영상콘텐츠 투자·제작 활성화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가령 OTT(over-

the-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이 영상콘텐츠 외주 제작을 의뢰하며 비용을 모두 감당하더라도 해당 OTT 기업은 현행법상 제작자가 아니므로 세제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만일 영상콘텐츠 투자·제작 활성화가 정책의 핵심 목표라면 김학수 외(2022)의 지적과 같이 향후 투자자에게도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⁹⁾ 한편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에서의 영상콘텐츠 산업 내 투자가 적정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국내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유관 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여지가 있지만, 경제 내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가능성도 공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조세특례 심층평가 등을 통하여 제도운영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일몰연장 여부 및 개선방향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는 첨단 산업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 및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추가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 지원은 시장실패를 보완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제

7)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30%, 영국은 25%, 프랑스는 20~30%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이예지·황성필, 2023. 7. 28.).

8) 「이코노미스트」, 「OTT도 세액 공제」 정부 방침에도 기업들 불만소리... 왜?, 2022. 11. 25.

9) 단, 세제지원 대상을 단순히 투자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호호 외, 2023. 5. 9.)은 동일 영상콘텐츠에 대한 이중지원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고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세제지원 정책들이 기업들의 시장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김빛마로 외, 2021), 정책의 효과가 장기에서 나타날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시장에서의 기술진보 양상을 주시하는 가운데 지원 분야를 정비하고 제도 운영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고용지원 조세특례 제도들의 일몰 연장 역시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의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들의 경우 중소기업

업의 우수인력 확보 가능성과 노동시장 내 고용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개입의 타당성이 일정 수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수행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¹⁰⁾ 두 제도 모두 효과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적인 개선 노력 없이 해당 제도들의 일몰시점이 단순 연장된 점은 다소 아쉽게 다가온다고 하겠다.

끝으로 기술과 자본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고자 기업승계 시 적용될 수 있는 증여세 저율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구간을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안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표 2> 참조).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대상이 확대되고 사후관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제도상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저율과세 적용 대상을 확

<표 2> 기업승계 세 부담 완화(안)

구분	현행		개정안	
	증여재산가액	세율	증여재산가액	세율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0억~10억원 이하	0% (기본공제)	0억~10억원 이하	0% (기본공제)
	10억~60억원 이하	10%	10억~60억원 이하	10%
	60억~300억원 이하	20%	60억~300억원 이하	
	300억~600억원 이하		300억~600억원 이하	20%
	연부연납 기간 확대	5년		20년
사후관리 기간 업종변경 완화 ¹⁾	중분류 내 변경 허용		대분류 내 변경 허용	

주: 1) 기업상속공제도 해당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2023. 7. 27., p. 1.

10) 권성준 외(2021), 전병목·배진수(2021), 김석영 외(2022)

대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하는 안이 올해 개정안에 담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 동안 표준산업 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안 역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작년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입법에 반영되지 않아 재추진되는 내용이다.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대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은 가업승계 직후의 과도한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추진방향으로 생각된다. 반면 증여재산가액이 60억~30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수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저율과세 적용 대상 확대의 효과는 사실상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만일 가업승계를 통한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이 정책의 목표라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¹¹⁾ 기본공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편이 더 적절한 추진방향일 것이다. 다만 정다운(2022)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업승계 지원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증 근거를 찾기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오히려 가업승계 여부와 관련된 결정은 기업에 맡겨두되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냉정히 평가받고 인수합병 절차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고유기술 및 일자리가 시장에 잔존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서 더 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소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될 것임을 언급해 두도록 한다.¹²⁾

2. 민생경제 회복

올해 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다수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기존 제도의 한도 상향이나 단순 연장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체감되는 세 부담 완화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제6항)가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 기간 및 방식에 따라 최대 300만~1,800만원 상당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발표된 개정안은 최대 공제한도를 600만~2,0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고 있다(<표 3> 참조). 이는 작년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한도 상향 및 월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확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금리 인상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는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 확대가 (확대 이전인 현재와 비교해) 세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 정도는 미미할 가능성이

11) 『국제신문』, 「한국세무사회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2023. 7. 27.

12) 『매일경제』, 「"자식한테 물려줄 바에는 문 닫는다"... 안 팔리는 중소기업 운명은」, 2023. 7. 31.

<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안)

(단위: 만원)

구분	현행				개정안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상환방식	고정,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	1,800	1,500	500	300	2,000	1,800	800	600
주택가격 ¹⁾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주: 1) 취득 당시 기준시가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2023. 7. 27., p. 1.

높아 실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포함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한도 상향안의 경우에도 실효성이 아쉽다. 해당 제도의 경우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된 바 있는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특례이다. 개정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액 한도를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고 있는데,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시 회차별 최대 납입 인정금액이 10만원임을 감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필요 시 인출이 어려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증가시킬 가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도 담겨있다. 본래 면세되었던 반려동물 진료비는 201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로 전환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외의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 개 다빈도 진료항목을 면세 동물 진료용역 범위에 포함시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최근 증가 중인 반려동물 양육가구¹³⁾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가가치세 면제 전환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다는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정다운, 2021)에 비추어볼 때 시행령 개정 이후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설령 가격인하 효과가 뚜렷하게 발현되더라도 해당 면제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세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반려동물 비양육가구가 반려동물 양육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조정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지나친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논란이 되었던 주세율 물가연동제(「주세법」 제8조)에 대한 개편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난 2021년 맥주·탁

13)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3. 7. 27.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는 약 602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주에 대한 주세율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종량세가 도입된 바 있는데, 주류 가격을 안정시키고 종량세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물가연동제를 탄력세율제로 전환하는 안이 개정안에 실렸다.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이후 주세율은 법정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될 예정인데,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적어 물가상승기 서민·중산층의 주류 소비에 대한 부담이 일정 수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 중인 유류세 관련 논의와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제59조)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제75조)의 취지를 최대한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주세율 결정 방식에 대한 정책당국의 숙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미래 대비

올해 개정안에는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목표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민생경제 회복 관련 정책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우선 개정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표 4>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안)

구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혼인공제 ¹⁾ 1억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주: 1)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증여받은 경우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2023. 7. 27., p. 2.

의) 신설안이다.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있을 경우 1억원까지 추가공제가 허용될 예정이다(<표 4> 참조). 따라서 개정안 입법 시 양가 부모가 (예비)신혼부부에게 1억 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부담 없이 증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신설안 마련 및 추진은 주택마련비(2억 8,000만원)를 포함한 결혼비용이 2023년 기준 평균 3억 3,000만원 수준이라는 설문결과¹⁴⁾ 등을 감안할 때 지난 2014년에 설정된 공제한도(5,000만원)가 지나치게 낮다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이해되는데,¹⁵⁾ 혼인공제 도입이 실제 혼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주택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금액 등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표 5> 참조)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증여가 발생했으되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을뿐더러, 일각의 지

14) 듀오, 「2023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 https://m.duo.co.kr/duostory/humanlife_view.asp?idx=1733, 검색일자: 2023. 8. 7.

15)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해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현재에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속해 있다.

<표 5>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 기준^{1), 2)}

(단위: 억원)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30세 미만	0.5	0.5	0.5	1
30세 이상	1.5	0.5	0.5	2
40세 이상	3.0	1.0	0.5	4

주: 1)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표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상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2) 1)의 내용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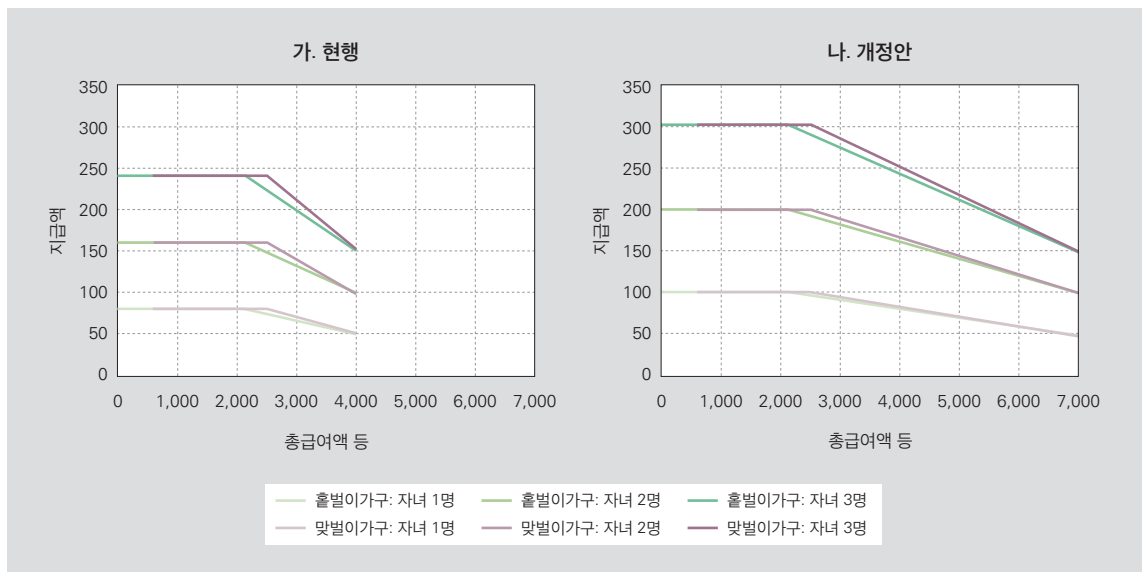
적처¹⁶⁾ 애초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이 적은 경우 혼인공제 도입에 따른 결혼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혼인공제 도입의 의의는 기존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실화하였다는 측면에 두는 편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혼인 시 세제, 청약, 대출 등에서 불리해지는 ‘결혼 페널티(penalty)’¹⁷⁾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출산 및 양육 지원 차원에서 자녀장려금의 소득상한 금액을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하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하는 확대안(그림 5 참조) 역시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2년 세법개정을 거치며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된 바

[그림 5]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안)

(단위: 만원)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 7. 27., p. 4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6) 장혜영 의원실, 「결혼자금 증여 공제 확대 평균적 가정에는 혜택 “0”, 부유층에게만 이득」, 2023. 7. 13.

17) 『서울신문』, “혼인신고하면 집 못 사요”... 대출·청약·세금도 ‘결혼 페널티’, 2023. 3. 23.

있는데, 올해는 그 연장선에서 지난 3월 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서 예고되었던 바와 같이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의 수혜가구 수는 2022년 기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지급액은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이와 같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가 기존에 운영 중이었거나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출산·양육 지원책¹⁸⁾과 함께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으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출산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 변화로 인한 경제적 유인의 변화 정도가 출산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자녀장려금(을 포함한 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들)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여타 재정지원 정책과의 보완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다수의 OECD 회원국처럼¹⁹⁾ 자녀 양육가구에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세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노후 대비 지원 측면에서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14조를 개정함으로써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저율(3~5%) 분리과세의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1,200만원 초과 시에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토록 한 조치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는데,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그 취지라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상당 수준 인정된다. 다만 현행 법률과 개정안 모두에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 아닌 연금소득 전체에 대하여 1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인데, 이에 따라 기준금액 주변에서 세 부담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근 국회에 발의된 김태년 외(2023. 5. 9.) 등의 법안처럼 해당 문턱 효과를 일정 수준 완화시키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올해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 중 국제심사위원회의 의결 생략이 가능하거나 조세심판 중 주심조세심판관의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의 금액은 3,000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4항 및 제62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개정안은 조세불복 처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그 기준을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세불복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표 6>

18) 가령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책,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책 등이 있다.

19) 『중앙일보』, 「세계개편, 출산·육아 지원에 힘준다… 부동산·법인세는 숨고르기」, 2023. 6. 11.

<표 6> 조세불복 유형별 평균 소요기간 및 기한 초과 비율: 2017~2021년

(단위: 일,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 평균
평균 소요기간	이의신청	36	40	37	50	46	41.8
	심사청구	99	100	109	118	101	105.4
	심판청구 ¹⁾	147	195	182	172	206	180.4
기한 ²⁾ 초과 비율	이의신청	5.1	5.5	4.8	16.1	10.8	8.5
	심사청구	33.8	27.4	26.9	35.4	17.2	28.1
	심판청구 ¹⁾	59.0	81.4	78.2	89.3	74.2	76.4

주: 1) 조세심판원의 내국세 심판청구 기준

2) 이의신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항변서 제출 시 60일, 「국세기본법」 제66조),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0조의2)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1. 10.), p. 139; 『세정일보』(2022. 10. 1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참조) 개정 취지 자체에는 공감되는 바가 크다. 다만 조세불복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신속성이 일정 수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도 전체 조세불복 사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소액사건²⁰⁾의 범위를 추가적인 보완조치 없이 단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 실제로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로 납세자의 불복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²¹⁾ 향후 이와 같은 우려 해소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소액사건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조치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세불복 사건의 처리인력을 늘리고 배분을 효율화하는 등의 근본책 마련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조세불복 사건의 건수 및 난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올해 개정안에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과약 기반을 공고화하는 조치 등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등 12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개정안에는 13개 업종(여행사업, 앰블런스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고 1개 업종을 정정(독서실운영업에 스타디카페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현재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소액(1,000원 미만)인 경우 부징수가 허용되는데(「소득세법」 제86조),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부터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국세청이 지속 추진 중인 세입기반 확충 및 소득과약력 제고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20) 국세통계포털 및 조세심판원(2023)이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청구금액 3,000만원 미만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전체 처리 대상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2022년 기준)은 각각 56.0%, 44.7%, 48.0%(내국세 기준)이다.

21) 『국세신문』, 『한국세무사회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2023. 7. 27.

고개가 끄덕여질 만하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지난 3년간 숨 가쁘게 추진되었던 실시간 소득과약체계 구축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피로감 내지 부담감이 상당 수준 누적되어 있는 상황으로,²²⁾ 지난해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올해 개정안에 포함된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적용기한 연장 등의 조치들만으로는 해당 사업자들의 부담을 충분히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협력비용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정훈 외(202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공통신고서식을 고안·보급함으로써 조세 및 사회보험 관련 각종 신고업무의 중복을 최소화하려는 등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총평 및 결론

이상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개정안은 투자·고용·세수입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가운데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 해당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순액법 기준 △4,719억원, 누적법 기준 △29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순액법 기준 △13.2조원,

<표 7> 2022~2023년 세법개정안의 세 부담 귀착¹⁾

(단위: 조원)

연도	서민·중산층 ²⁾	고소득층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³⁾	합계
2022	△2.2	△1.2	△2.4	△4.1 ⁴⁾	△3.3	△13.1
2023	△0.6	△0.1	△0.0 ⁵⁾	△0.0	0.3	△0.5

주: 1) 순액법 기준으로 세수효과 계산

2)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자

3)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4) 법인 전체 부담액(△6.5)에서 중소·중견 기업 부담액(△2.4)을 제외한 수치

5) 아래 출처에서 중견기업 포함 여부가 불분명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각 연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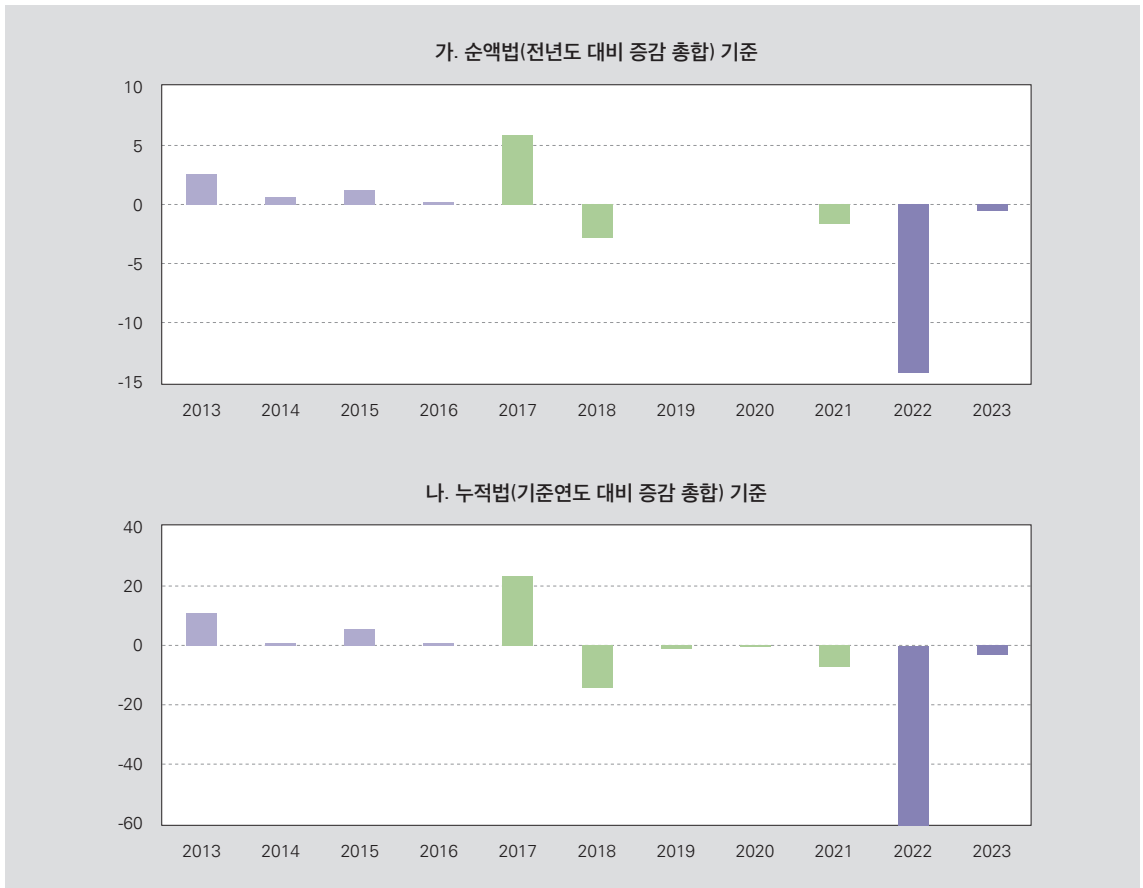
누적법 기준 △60.2조원이었던 작년 개정안의 세수효과와 비교해 상당히 작은 규모의 세수입 감소라 할 수 있는데, 예년과 비교하더라도 올해 개정안이 비교적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세 부담 귀착 측면에서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 폭(△6,302억원)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7> 참조). 이는 제Ⅲ장 제3절에서 살펴보았던 자녀장려금 확대 운영 계획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해당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 확대 운영이 항구화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에서의 진통은 예년 대비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주요

22) 『국세신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 비용, 견딜만한가」, 2023. 8. 1.


[그림 6] 2013~2023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단위: 조원)



주: 옅은 보라색은 박근혜 정부, 연두색은 문재인 정부, 짙은 보라색은 윤석열 정부에 해당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각 연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내용 중 법 개정사항이 아닌 경우(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도 예년과 비교해 논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장기간 추진을 고민해 왔거나 혹은 언젠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안건들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이 다음으로 유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들을 장기간 미뤄두는 경우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다음 개정안 마련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2021. 10.

권성준·강성훈·조희평,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9.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 2023. 7. 4.

_____,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보도자료, 2023. 7. 27.

_____,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 7. 27.

_____, 『2023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2023. 7. 27.

_____, 『국세수입 현황』, 보도자료, 각 연월.

_____, 『세법개정안』, 각 연도.

김빛마로·윤성주·윤성만,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9.

김석영·김소희·이철인·안성희,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22. 12.

김태년·홍성국·서동용·조승래·신영대·강준현·한병도·한준호·윤준병·권철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학수·전초란·김도형·이동규, 『2022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22. 9.

이세진·임재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2. 8. 5.

이용호·홍문표·구자근·김승수·김예지·최영희·성일중·장동혁·엄태영·이현승·양금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2023. 5. 9.

이예지·황성필,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 7. 28.

장혜영 의원실, 『결혼자금 증여 공제 확대 평균적 가정에는 혜택 “0”, 부유층에게만 이득』, 보도자료, 2023. 7. 1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2023. 3. 28.

전병목·배진수,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8):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9.

정다운,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소고』, 『재정포럼』 제305호, 2021. 11., pp. 8~35.

_____,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재정포럼』 제314호, 2022. 8., pp. 38~51.

정훈·이미현·권정교·김치울, 『조세·사회보험 사무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근로복지공단·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조세심판원, 『조세심판통계연보 2022』, 2023.

통계청, 『2023년 5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2023. 7. 26.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 5.

『국세신문』, 『한국세무사회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2023. 7. 27.

_____, 『자영업자의 납세협력 비용, 견딜만한가』, 2023. 8. 1.

『매일경제』, 『“자식한테 물려줄 바에는 문 닫는다”... 안 팔리는 중소기업 운명은』, 2023. 7. 31.

『서울신문』, 「“혼인신고하면 집 못 사요”… 대출·청약·세금도 ‘결혼 페널티’」, 2023. 3. 23.

『세정일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조세불복 능력 처리에 납세자들은 목빠진다」, 2022. 10. 11.

『이코노미스트』, 「‘OTT도 세액 공제’ 정부 방침에도 기업들 불멘소리… 왜?」, 2022. 11. 25.

『중앙일보』, 「세계개편, 출산·육아 지원에 힘준다… 부동산·법인세는 숨고르기」, 2023. 6. 11.

『YTN』, 「2023 세법개정안 출산장려 효과? 글썸…」, 2023. 7. 28.

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3&sttsMtaInfrId=20230103001202317876, 검색일자: 2023. 8. 14.

듀오, 「2023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 https://m.duo.co.kr/duostory/humanlife_view.asp?idx=1733, 검색일자: 2023. 8. 7.

법제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_____, 「대한민국헌법」

_____,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_____,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_____,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_____, 「조세특례제한법」

_____, 「주세법」

국세통계포털, 「15-1-2. 이의신청 처리 현황 I (지방청, 세목)」,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3&sttsMtaInfrId=20230103001202317874>, 검색일자: 2023. 8. 14.

_____, 「15-1-3. 심사청구 처리 현황 I (지방청, 세목)」,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